청렴세상

부정청탁,
금품수수
안심하고
신고하세요.

청탁금지법 위반행위
신고자 보호 · 보상 제도 안내

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

부정청탁, 금품수수 안심하고 신고하세요.

? 신고자가 나라는 게 알려지지는 않을까?

! 걱정마세요. 신고자 신상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됩니다.

? 내 가족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?

! 불안해하지 마세요.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? 온전한 직장생활이 가능할까?

! 당당하게 행동하세요. 각종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

?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는데?

!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온 국민이 당신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응원할 것입니다.

국민권익위원회는

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국민이

신고로 인한 **불이익 우려 없이**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

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1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합니다.

⋙ 신고자 뿐 아니라 신고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.
⋙ 조사 ·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
⋙ 누구든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.

신분노출시 보호요청 방법
-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전화상담 및 접수
  (청렴신문고 1398.acrc.go.kr, 044-200-7747~8)
- 비밀을 누설한 자는 형사처벌·징계처분을 받게 됨

2 자진 신고하는 경우 책임이 감면됩니다.

⋙ 자진신고한 경우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, 형벌 · 징계 · 과태료 ·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⋙ 신고를 받은 사람이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 또는 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3 신고는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⋙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.

4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보호해 드립니다.

»» 신고자, 협조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불이익 조치의 예시

① 파면, 해임,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
②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
③ 전보, 직무재배치, 상여금의 차별지급 등 근무조건상 불이익 조치
④ 따돌림, 폭언 등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조치
⑤ 인·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
⑥ 물품·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등

»» 권익위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요구하고,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.

»» 신고자와 협조자가 전직·전출·전입·파견근무 등을 원하는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사권자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.

불이익조치 원상회복 요청 방법
-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전화상담 및 접수
  (청렴신문고 1398.acrc.go.kr, 044-200-7747~8)
-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요구
- 불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, 형사처벌

5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»» 신고로 인해 신고자, 협조자, 친족, 동거인이 물리적인 위협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신변보호 조치의 종류

①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
② 일정기간 신변경호
③ 참고인·증인으로 출석·귀가시 동행
④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
⑤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

신변보호 요청 방법
-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전화상담 및 접수
  (청렴신문고 1398.acrc.go.kr, 044-200-7747~8)
- 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

신고 보상금과
포상금이
지급됩니다.

1 신고 보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⋙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있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지급됩니다.

보상금의 지급기준

보상대상가액	지 급 기 준
1억원 이하	보상대상가액의 30%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3천만원 + 1억원 초과금액의 20%
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	1억1천만원 + 5억원 초과금액의 14%
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	3억2천만원 + 20억원 초과금액의 8%
40억원 초과	4억8천만원 + 40억원 초과금액의 4%

※ 보상대상가액 :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

신고 보상금 신청방법
-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전화상담 및 접수
(청렴신문고 1398.acrc.go.kr, 044-200-7745,7743)

2 신고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⋙ 신고로 인한 공익증진 기여도에 따라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.

불이익 방지를 위한 신고자 행동요령

1 부패신고 이전 단계

»» 신고내용의 온라인(직장게시판 및 SNS 등) 게재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.

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거나, SNS 등을 통한 신고내용 유포 시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할 우려가 있습니다.

»» 직장내 업무용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합니다.

직장내 전화·컴퓨터 등 이용과 이메일 사용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으며, 조직 구성원에게 부패행위 신고 사실 등을 언급할 경우 내부 신고자로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2 부패신고 이후 단계

■ 신분이 밝혀지기 전

»» 위원회와 접촉하는 것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
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하여 통화, 면담 등을 하는 경우 그 접촉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»» **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합니다.**
소속기관·부서내에서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»» **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을 때 당황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.**
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고사항 조사 시 당황하거나 위원회 조사관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

■ 신분이 밝혀진 후

»» **소속기관·부서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.**
항상 소속기관의 차별 또는 불이익조치를 주시하셔야 하며, 매일 기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위원회 보호 조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»» **징계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더라도 격렬한 항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.**
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오히려 신고자가 징계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»» **소속기관 부서의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**
신고자, 협조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

»» **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**
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에 보호상담 및 보호요청을 하시고, 소청심사 또는 부당해고 구제 등 다른 불복구제 절차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.

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· 보상 제도 안내

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